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출입국관서에 납부하는 비자·체류 관련 수수료를 신용카드·직불카드 또는 전자화폐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제1호 본문 중 “수입인지”를 “수입인지, 신용카드·직불카드”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증표”를 “증표, 신용카드·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수입증지”를 “수입증지, 신용카드·직불카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수수료) ① (생략)	제12조(수수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 -----.
1. 출입국·외국인청,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: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<u>수입인지</u>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. 다만,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<u>증표</u> 로 한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입인지, 신용카드·직불카드</u>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<u>증표, 신용카드·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</u> ----- -----.
2. 시·군·구 또는 읍·면·동에 납부하는 경우: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<u>수입증지</u>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	2. ----- ----- ----- <u>수입증지, 신용카드·직불카드</u> ----- -----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